

[서식 예]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집행해제 (파산 면책 결정 후 집행해제)

##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

사 건 20 타채 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
신청인(채무자) 장00

서울 용산구 00

피신청인(채권자) 주식회사 00 상호저축은행

서울 강남구 대치동 00

0제 3 채 무 자 1. 주식회사 국민은행

서울중구 남대문로 2가 9-1

대표이사 000

2.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

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-11엘아이지타워

대표이사 000

3.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

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

대표이사 000

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00지방법원 2018 하면 ----호 면책(2018하단----호 파산선고) 사건의 신청인으로 2018. \*\*. \*\*.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았고, 같은 법 제6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파산채권에 산입된 강제집행결정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첨 부 서 류



- 1. 면책허가결정 등본
- 1. 면책허가결정 확정증명원
- 1. 채권자목록등본
- 1.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

20 . . .

위 신청자(채무자) 홍 길 동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원
제출부수	신청서 원본 1부 및 부본(제3채무자의 수 + 1부)
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의 제 출	•변제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 권에 기한 강제집행·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.(위 법 제615조 제3항)
비용	·인지액 : 불요 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
기 타	· 채권자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.